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폭염·한파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3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여야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로 안전취약계층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u>구축</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u>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 폭염피해 보호대책 마련</u>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구축, 안전취약계층의 보호</u> ----- -----.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3. ~ 5.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u>구축</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u>안전취약계층 한파피해 보호대책 마련</u>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구축, 안전취약계층의 보호</u> ----- -----.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¹⁾을 말하는데,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한이 반복되는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폭염·한파 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① 폭염·한파 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②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 마련, ③ 폭염·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④ 폭염·한파 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⑤ 그 밖에 폭염·한파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²⁾³⁾,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의무에 ‘안전취약계층 폭염·한파 피해 보호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련하는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에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한파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을 폭염·한파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⁴⁾되는데,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로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규정하면서, 지역별 폭염·한파 대책 마련 시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중복하여 입법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에 취약한 대상인 안전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 의무에 관한 자구를 ‘안전취약계층 폭염·한파 피해 보호대책’에서 ‘안전취약계층 보호 방안’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법 시행 유예기간을 개정안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9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